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, 사회부

발 신 참여연대 (담당 : 이지현 팀장 02-725-7104 jhlee@pspd.org)

제 목 참여연대,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표

날 짜 2014. 11. 6. (총 2 쪽)

보 도 자 료

참여연대,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표 기자회견 개최 각 정당에 반부패 · 안전 관련 10대 법률 제 · 개정 의견서 전달

- 2014년 11월 6일(목), 오전 11시, 국회 정문 앞

1. 참여연대(공동대표 : 김균 · 이석태 · 정현백)는 11/6(목), 오전 11시, 국회 정문 앞에서 "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을 위해 국회가 개선해야 할 법률들"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, 반부패 · 안전 관련 10대 법률 제 ·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.
2.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,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.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손질해야 할 법과 제도는 다양하고 많지만, 그동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온 분야에서 제2,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법률들을 추려 10대 법안에 대한 법률 제 · 개정 의견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3. 참여연대가 발표한 10대 법률 제 · 개정안은 ▲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'관피아'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부정청탁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, ▲부패 척결을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,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, ▲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 권리와 안전, 건강과 생명 등과 관련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영하거나, 기본법인 민법에 반영, ▲유명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하는 자에게 회사의 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개정, ▲위험 유해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, ▲생명, 안전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기간제법, 파견법 개정, ▲화학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,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유해물질과 안전대책에 대한 알

권리를 강화하고,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감시하고 개입할 것을 보장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, ▲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, ▲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수직중축 리모델링을 다시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, ▲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다.

4.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법안 의견서를 전달하고, 정기국회 법안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. 아울러 10대 법안 외에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막고,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 의견제시도 추진할 예정이다.

■ 별지 :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-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(총 11쪽)